2022년 4월 20일

**수 신** :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참 조** : 박영규 팀장님

**발 신** : 변호사 김동은 / 김광열 / 박정민 / 남현재 / 정원식

**제 목** : Brookfield Infrastructure Debt Fund III-B LP 투자 관련 검토 (Our ref: S726F139, 표지 포함 : 44면)

1.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로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제2호에 의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국내펀드**”)를 설정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국내펀드는 Brookfield Asset Management Inc.(이하 “**Brookfield**”)가 케이만아일랜드(Cayman Islands) 법률에 따라 면제유한책임조합(exempted limited partnership)의 형태로 설립하는 Brookfield Infrastructure Debt Fund III-B LP(이하 “**본건 역외펀드**”)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본건 수익증권**”)에 투자(이하 “**본건 투자**”)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귀사는 대안적인 투자 구조로서 국내펀드가 케이만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면제유한책임조합의 형태로 설립할 예정인 entity이하 “**Note Issuer**”)가 발행하는 채무증권(Notes)(이하 “**Note**”) 및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이하 “**Note Issuer 수익증권**”)에 투자(이하 “**대안적 투자**”)하는 형태로 국내펀드를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적인 투자 구조에서 Note Issuer는 본건 역외펀드(BID III-B)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한편, 본건 역외펀드는 북미, 유럽 등 외국에 있는 자산에 투자할 예정이나, 대안적 투자구조에서 Note Issuer가 Note 및 Note Issuer 수익증권 인수계약 등을 체결할 당시 투자 대상인 자산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국내펀드 및 Note Issuer는 해당 투자 대상 자산을 선정할 권한을 보유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사는 저희 법무법인에, 국내펀드가 본건 투자를 함에 앞서 국내펀드의 Note에 대한 대안적 투자와 관련되는 Purchase Agreement(이하 “**Note Purchase Agreement**”), 본건 역외펀드 관련 Amended and Restated Agreement of Exempted Limited Partnership of Brookfield Infrastructure Debt Fund III-B LP(이하 “**본건 역외펀드 LPA**”)의 주요 Term의 내용 및 본건 역외펀드LPA의 내용 중에서 국내펀드에 특별히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1. 검토 의견
   1. **논의의 전제**

본건 역외펀드 LPA의 준거법은 케이만아일랜드 법률입니다. 그러므로 본건 역외펀드LPA의 각 조항에 문언 그대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본건 역외펀드LPA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해당 외국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의견은 한국법을 제외하고 케이만아일랜드 법률상 본건 역외펀드 LPA의 내용이 각각 적법·유효하며 그 문언의 내용대로 집행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검토메모에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본건 역외펀드에 투자하게 될 국내펀드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재하였고, 본건 역외펀드LPA의 모든 문제점 내지 위험을 분석하고자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건 역외펀드LPA의 내용 이외에 본건 역외펀드에 대한 투자의 상업적 투자성과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1. **본건 역외펀드LPA에 대한 검토**

본건 역외펀드LPA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기존 유사 사례 등의 검토 경험 등에 비추어, 동종 혹은 유사 구조로서 상당한 정도의 글로벌 인지도가 있는 다른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해외 사모펀드들에서 통상 제공되는 펀드 약정서들의 내용과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크게 다르거나 투자자에게 (동종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정도의 법률적 risk를 초과하는 수준의) 현저하고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용보수 및 수익의 분배 등 기타 산술적인 수치로 산정되는 부분들은 기존 해당 운용사의 수익성과에 비추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법률적 측면에서 판단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한편, 본건 역외펀드LPA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의 산물인바, 예를 들어 운용사의 기존 투자성과(Track Record) 및 명성이 우량하거나 운용자산에 대한 시장 수요가 높은 경우 등에는 운용사 측의 협상력이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입니다(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나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통상적인 수준’ 또는 ‘유불리의 기준’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의견은 “통상적으로 보아 계약 자체에서 인지되고 기대되는 수준의 법률적 risk를 초과하는 수준의 불합리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는 취지이고, 여하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각 조항들의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역외펀드 LPA의 주요 내용은 별첨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국내펀드의 본건 투자 가부**

1. **국내펀드의 본건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의 성격**

본건 역외펀드는 케이만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조합(limited partnership)으로서 국내펀드를 포함한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역외펀드의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한 후 그 운용성과를 각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고(본건 역외펀드 LPA 2.5조 및 6.1조 참조), 이와 같은 운용업무는 투자자들에 의한 일상적인 운용지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또는 그 위임을 받은 운용사를 말하며, 이하 동일함)의 재량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 의하여 수행될 예정입니다(본건 역외펀드 LPA 4.1조 참조).

이와 같은 본건 역외펀드의 운용구조는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에서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 “집합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결국 국내펀드가 본건 역외펀드의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1. **전문투자형(일반) 사모펀드의 운용제한 완화**

종래 자본시장법 규정은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공모펀드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제81조의 운용기준을 일부 또는 제한적으로 적용하였으나, 2015. 10. 25.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펀드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81조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였고, 이는 2021. 10. 21.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즉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특례 규정(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은 자본시장법 제81조의 자산운용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일괄 배제하였으므로, 국내펀드와 같은 재간접펀드의 경우 외국펀드인 본건 역외펀드에 그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감독원 담당자의 입장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국내 재간접펀드의 운용제한 완화에도 불구하고,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시 등록의무 규정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외국 펀드의 투자권유나 투자광고의 상대방이 국내 재간접펀드인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른 펀드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1]](#footnote-1) 본건 역외펀드가 감독원에 등록된 상태인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footnote-2).

1. **소결론**

이상과 같이 국내펀드의 본건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는 (아래 외국환신고의무의 준수를 전제로) 자본시장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거래로 판단됩니다.

* 1. **국내펀드의 대안적 투자 가부**

1. **국내펀드의 Note Issuer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

Note Issuer 또한 본건 역외펀드와 마찬가지로 케이만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조합(limited partnership)으로 예상되며, 그 운용구조가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에 해당한다는 점, 결국 국내펀드가 Note Issuer 수익증권의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라 Note Issuer를 외국펀드로서 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점은 3.에서 검토한 바와 유사합니다.[[3]](#footnote-3)

1. **Note의 법적 성격**

다만 귀사에서 주로 고려하고 있는 본건 역외펀드에 대한 본건 수익증권 투자와는 달리, 대안적 투자 구조에서는 외국펀드의 성격을 가진 Note Issuer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외 별도 증권(Note)을 국내펀드가 매입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증권의 성격 및 그에 대한 투자의 법적 제한 유무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Note Issuer는 Note 발행을 통해 국내펀드로부터 조달한 금원을 하위펀드인 본건 역외펀드(BID III-B)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취득에 사용한 후 Note의 조건에 따라 투자자인 국내펀드에 이자 지급 및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Note Issuer가 하위펀드로부터 수령한 수익은 거래종결에 따른 분배일 이후 지급순위에 따라 Note의 소지인에게 분배됩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증권에 표시되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며, 그 중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 상법상 ‘사채’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사채에는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이나 통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 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 이와 같은 증권에 관한 규율 체계 상, Note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 그 중에서도 사채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Note의 발행 주체가 투자신탁 형태의 외국펀드라는 점에서 Note를 집합투자증권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국내법상 인정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투자회사의 경우 지분증권 형태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을 예정하고 있고,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금융감독원 외국 사모펀드 등록 담당자의 입장은 국내펀드의 경우도 수익증권이나 지분증권 형태의 집합투자증권만 인정되고, 채무증권 형태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외국 entity가 수익증권이나 지분증권 형태가 아닌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라면 이를 집합투자증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채무증권의 발행 주체가 법인이 아닌 외국펀드라 하여 달라지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에서 Note Issuer가 발행하는 Note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투자증권이 아닌 채무증권(사채)으로 평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국내펀드의 Note에 대한 투자**

위 3. (2)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동일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일정한 운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운용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1항).

따라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설정 및 운용하고자 하는 국내펀드의 경우 Note Issuer가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그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고, 자산운용 제한이라는 측면에서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의무 관련 사항**

1. **관련 규정**
   * 1. 금융회사등

금융회사등(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이 금융·보험업 또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하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수리가 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해외진출규정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금융회사등이므로 동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신고의무 역시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부과됩니다[[4]](#footnote-4).

* + 1. 역외금융회사

해외진출규정 및 동 규정이 준용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역외금융회사’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인 회사 및 계약형태를 포함한다)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를 의미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15호).

본건 역외펀드 및 대안적 투자구조에서의 Note Issuer는 증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실질적인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회사이므로 역외금융회사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습니다.

* + 1. 해외직접투자

한편 “해외직접투자”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 동 시행령 제8조 제1항). 해외진출규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않고도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회적 투자행위까지 해외직접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해외진출규정 제7조 제2항).[[5]](#footnote-5) 즉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투자뿐만 아니라 지분투자금액을 포함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부채성증권의 매입, 대출·보증 및 담보제공)한 총투자금액이 당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 이상인 경우 등에도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위와 같은 해외직접투자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상 ‘거주자의 외화증권 투자’로 보아 신고 요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일반법인/개인의 경우와 달리,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4호의 ‘기관투자자’[[6]](#footnote-6)는,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외국환거래규정 제7-35조에 의한 일정한 보고의무를 준수하면 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제2항). 즉 집합투자기구인 국내펀드는 기관투자자로서 외화증권 투자자금의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매분기별 외화증권의 인수, 매매, 보유, 대여 및 외화예금의 보유, 운영실적과 투자자금의 대외지급 및 국내회수실적을 다음 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35조 제1항).

한편, 역외금융회사 및 그 자회사, 손회사 등이 해외직접투자(우회적 투자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자회사, 손회사 등 설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건 투자 시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의무 검토**

국내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귀사는 금융회사등이고, 본건 역외펀드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증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 형태로서 실질적인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역외금융회사 정의에 부합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15호).

따라서, 국내펀드의 본건 역외펀드에 대한 출자지분이 본건 역외펀드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출자요청에 따라 매 번의 출자납입요청(capital call)에 따른 납입 이전에 해외진출규정에 따른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신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총 출자금액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본건 운용사(Brookfield) 및 그 계열사가 운용하는 펀드로서 본건 역외펀드와 병행하여 투자하는 다른 펀드들의 출자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본건 역외펀드의 총 출자금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7]](#footnote-7) 다만, 금융감독원은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설정 및 운용하는 수 개의 투자신탁이 동일한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위 출자금액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되는 금액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모든 투자신탁들의 해당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건 역외펀드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신고 요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내펀드 외에 귀사가 설정한 다른 투자신탁들의 본건 역외펀드에 대한 출자금액까지 합산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국내펀드의 본건 역외펀드에 대한 출자금액이 본건 역외펀드의 총 출자금액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 이르지 않고) 거주자의 ‘외화증권 취득’에 해당됩니다. 이 때 기관투자자인 귀사의 경우 사전 신고의무는 면제되고, 매 분기별 외화증권의 인수, 매매, 보유 및 운영실적과 투자자금의 대외지급 및 국내회수실적을 다음 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국내펀드의 본건 역외펀드에 대한 출자비율이 총 출자금액의 10% 미만으로 약정되었으나 가장 먼저 본건 투자를 실행하는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총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출자한 것이 될 경우, 해외직접투자신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 담당자는 출자약정비율이 10% 미만일지라도 본건 역외펀드의 국내펀드에 대한 Capital Call 시점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출자비율이 10%를 초과한다면 해외직접투자신고가 필요하며, 추후 10% 미만으로 출자비율이 감소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 **대안적 투자 시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의무 검토**

Note Issuer도 역외금융회사의 정의에 부합하며, 대안적 투자 구조에서는 (i) 국내펀드의 Note Issuer에 대한 출자지분이 Note Issuer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ii) 채무증권인 Note의 인수 금액이 Note Issuer 총자산의 10% 이상에 해당하거나, (iii) 출자금액 및 Note를 인수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총투자금액이 Note Issuer의 총자산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사전에 해외진출규정에 따른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신고가 필요합니다. (i), (iii)의 경우 출자요청에 따라 매 번의 출자납입요청(capital call)에 따른 납입 이전에 해외직접투자신고가 필요할 것이며, (i)과 관련하여 총 출자금액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귀사 및 그 계열사가 운용하는 펀드로서 Note Issuer와 병행하여 투자하는 다른 펀드들의 출자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Note Issuer의 총 출자금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국내펀드의 Note Issuer에 대한 총투자금액이 위 (i), (ii), (iii)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외화증권 취득’에 해당되어 귀사의 사전 신고의무는 면제된다는 점 등은 본건 투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1. **참고 – 역외금융회사 신고 이후의 보고사항**

한편 최초 역외금융회사 신고 이후에도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나 사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신고/보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종류** | **기간** | **보고기관** |
| **최초 투자 이후 보고** |  |  |
| 송금(투자) 증빙서류 제출 | 송금 후 즉시 | 금융감독원장 |
|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현황’의 보고 (제7조 제5항) | 다음 분기 첫째달 20일 | 금융감독원장 |
| **역외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보고** |  |  |
| 역외금융회사의 자회사 및 손회사 설립(투자)보고 (제7조 제3항) | 투자일로부터 1개월 | 금융감독원장 |
| **내용 변경 및 청산 보고** |  |  |
|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의 변경 (투자지분 매각, 원금 회수로 인한 지분율 변동; 제7조 제4항) 및 청산 |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금융감독원장 |
|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금 회수내역 보고 (투자금 회수; 제7조 제10항) | 회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금융감독원장 |
|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청산 (제7조 제4항) |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금융감독원장 |

한편, 대안적 투자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만약 Note Issuer의 본건 역외펀드(BID III-B)에 대한 출자비율이 출자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귀사가 (Note Issuer가 해당 하위펀드에 출자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자회사 설립보고)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해당 하위펀드가 어느 투자대상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지분비율이 해당 투자대상 회사 지분 총액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투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손회사 설립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사가 Note Issuer 및 하위펀드의 투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Note Issuer, 또는 하위펀드의 투자로 인하여 귀사의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귀사가 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운용사 또는 그 계열사와 협의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8]](#footnote-8)

* 1. **결론**

본건 역외펀드 LPA는 저희 법무법인의 기존 유사 사례 등의 검토 경험 등에 비추어, 해외 사모펀드들이 통상 제공하는 집합투자규약의 내용과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크게 다르거나 투자자에게 (동종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정도의 법률적 리스크를 초과하는 수준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국내펀드는 일반 사모펀드로서 재간접으로 운용하는 경우 운용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제한 규정의 범위 내인 것으로 사료되고,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적정한 외국환거래 신고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국내펀드의 본건 역외펀드에 대한 투자가 달리 법령상 제한조건에 반하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귀사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1. BID III-B LPA(이하 “LPA”)의 주요 내용**

| **항목** | **내용** | **LPA 조항** |
| --- | --- | --- |
| **개요** | * 본 계약은 다음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됨. * BID IIIB GP, LTD (“**업무집행조합원**”; General Partner) * 본건 펀드(Partnership; Brookfield Infrastructure Debt Fund III-B LP)에 수시로 참여하는 각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 업무집행조합원 및 최초유한책임조합원(Initial Limited Partner)[[9]](#footnote-9)은 Agreement of Exempted Limited Partnership을 체결하여 본건 펀드를 설정하고, 유한책임조합법(Cayman Islands Exempted Limited Partnership Law)에 따라 Cayman Islands Registrar of Exempted Limited Partnerships(이하 “**Registrar**”)에 면제유한책임조합(exempted limited partnership)으로 등록하였음. *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은 본 계약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유한책임조합법에 규정된 바에 따름. | 전문  LPA 2.1 |
| **기간 및 목적** | * 본건 펀드의 기간은 Registrar에 설립보고서(Statement)를 제출한 날부터 개시하여, 최종모집일(Final Closing Date)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음. 단, Brookfield 관리자(Brookfield Administrator)는 본건 펀드의 기간을 1회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 승인을 득할 경우 추가적으로 1회에 한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음. * 본건 펀드 영업(Partnership Business)은 북미, 유럽 및 남미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부 국가의 후순위 인프라 대출 및 잠재적인 거래 가능한 대출 증권에 투자(primary lending investments)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LPA 2.4  LPA 2.5 |
| **본건 펀드의 과세 분류** | * 본건 펀드는 미 연방 소득세의 목적에서 조합(partnership)으로 분류됨. | LPA 2.7 |
| **조합원의 모집** | * 본건 펀드에 가입한 각 유한책임조합원은 본 계약의 체결 및 (본건 펀드를 대리하는) Brookfield 관리자의 승인 시 본건 펀드의 유한책임 조합원이 된 것으로 간주됨. * 이러한 유한책임조합원의 가입 후 지체 없이 최초유한책임조합원은 본 계약서 기재 일자에 본건 펀드에서 탈퇴하며, 본건 펀드는 최초유한책임조합원에게 동 조합원의 자본출자금(해당되는 경우)을 환급하여야 함. | LPA 2.8 |
| **통화** | *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에서 언급되는 ‘달러($)’는 미화 달러를 의미함. | LPA 2.9 |
| **Brookfield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자본 약정금** | * Brookfield[[10]](#footnote-10)의 본건 펀드 및 병행투자기구(Parallel Investment Vehicles)에 대한 총 자본 약정금은 $500 million이며, Brookfield는 자본출자금납입일(Capital Call Payment Date)에 본건 펀드 및 병행투자기구 등에 자본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금액은 본건 펀드 및 병행투자기구에 대한 모든 조합원의 총 자본 출자금에 대한 자신의 출자금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함. * 업무집행조합원의 본건 펀드에 대한 약정금은 $10,000이며, 업무집행조합원은 자본출자금납입일에 본건 펀드에 대하여 자본출자금(기본관리수수료(Base Management Fee)에 관한 자본출자금은 제외)을 납입하여야 함. | LPA 3.1 |
| **유한책임조합원의 자본출자금** | * 각 유한책임조합원의 약정금은 각 유한책임조합원의 인수계약에 대한 본건 펀드의 승인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음. * 각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통지(Funding Notice)시 본건 펀드에 자본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함. 자본출자금은 각 유한책임조합원의 각 약정금에 비례함. * 자본출자금은 출자통지 수령일로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12:00 p.m.(뉴욕시간) 이후에 납입되어야 함. * 단, (i) 후속출자(follow-on Investment) 및 단계적인출투자(Staged-Draw Investment)의 경우 각 유한책임조합원은 해당 투자(Investment)에 대한 각자의 지분비율(Sharing Percentages)에 따라 자본출자금을 지급해야 하고, (ii) 본건 펀드가 지불해야 하는 기본관리 수수료(Base Management Fee)에 대한 각 유한책임조합원의 자본출자금과 관련해서는 Sec 4.3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iii) 본건 펀드가 지불해야 하는 초과설립비용(Excess Organizational Expenses)에 대한 각 유한책임조합원의 자본출자금은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의 각 약정금에 비례하고, (iv) 본건 펀드가 지불해야 하는 자금모집대행수수료(placement agent fee)에 대한 각 유한책임조합읜의 자본출자금은, 자금모집대행수수료(placement agent fee)를 발생시킨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의 각 약정금에 비례하도록 함. * 최초투자(Initial Investments): 본건 펀드는 최초모집일 전에 Brookfield로부터의 중간투자(Warehoused Investments) 매입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투자를 할 수 있음. 최초투자의 매매대금은 (x) Brookfield 약정금과 관련하여 Brookfield가 출자한 금액 (y)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z)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과 Brookfield가 Brookfield 약정금과 관련하여 출자한 금액을 혼합한 금액으로 조달할 수 있음. 본 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통지를 수령한 경우 Sec 4.9에서 정한 규정과 조건에 따른 최초투자금에 비례하는 금액을 본건 펀드에 출자하여야 함. * 이를 명확히 하면, 최초투자의 매매대금이 위 (z)에 따라 조달되는 경우 Brookfield는 해당 최초투자에 관한 자금차입에 따른 미상환 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위 (y) 또는 (z)에 따라 Brookfield가 조달한 최초투자의 일부 매매대금(Brookfield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유한책임조합원이 출자하는 금액을 포함함)이 최종모집일 당시 지분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경우, Brookfield 관리자는 (본건 운용사와 상의한 후) 해당 비율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초투자에 관한 지분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중간투자(Warehoused Investments): Brookfield는 최초모집일 전에 본건 펀드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잠정적인 투자(“**중간투자**”)를 할 수 있음. 최초모집일 이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본건 펀드는 해당 중간투자를 (a) 해당 중간투자에 대한 당초인수비용에 (b) 본건 펀드의 해당 중간투자 매입 전에 누적된 이자(단, Brookfield가 해당 중간투자 인수 시 해당 중간투자의 당초인수비용에 대하여 적어도 연 5%의 수익률(보유비용(Carry Cost)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본건 펀드는 Brookfield에게 해당 중간투자에 관한 보유비용을 지급하여야 함)를 합산한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음. Brookfield 관리자는 예정된 유한책임조합원에게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의 본건 펀드 가입 및 본 계약 체결(해당 시점에 본건 펀드의 해당 중간투자 매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이전에 중간투자를 공개하여야 함. * 가치 변경의 효과: Section 3.2(d)에도 불구하고, 최초모집일 이전에 (A) 어느 중간투자 또는 최초투자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Brookfield 관리자[[11]](#footnote-11)는 자신의 재량으로 최초모집일에 해당 중간투자 또는 최초투자를 승인한 유한책임조합원의 이익을 조정하거나, 해당 사건을 반영하여 최초투자와 관련하여 유한책임조합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나 중간투자와 관련하여 본건펀드가 Brookfiel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각 조정할 수 있으며, (B) Brookfield가 해당 중간투자 또는 최초투자와 관련하여 기초수수료(origination up-front fees) 또는 이와 유사한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 Brookfield 관리자는 본건 펀드가 해당 중간투자 또는 최초투자에 대하여 Brookfiel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마치 해당 중간투자의 만기에 해당 수수료가 분할 상환된 것처럼 본건 펀드가 해당 매입일부터 해당 수수료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자본출자금은 해당 자본출자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투자 또는 본 계약에 의하여 허용된 기타 다른 목적에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조합원에게 반환됨. 단, Brookfield 관리자가 위 90일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함(또한 위 90일의 기간은 Brookfield 관리자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을 통지할 경우 추가로 30일간 연장될 수 있음). * 최종모집일로부터 최초 1년이 지나면 유한책임조합원은 120일 간 유한책임조합원의 75% 이상 동의를 득하여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Brookfield 관리자에게 약정기간(Commitment Period)을 종료시킬 것을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Brookfield 관리자가 해당 서면 통지를 수령하는 시점에 약정기간은 종료됨. * Brookfield 관리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투자수익 또는 단기투자수익에 대한 어느 조합원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조합원의 자본출자금 지급을 위하여 유보 및 사용할 수 있음. * 약정기간이 중단되는 동안 또는 약정기간이 만료 또는 종료된 경우, 본건 펀드에 의한 투자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조합원은 자본출자금 납입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단, 이러한 경우 Brookfield 관리자는 (i) 본건 조합이 후속투자를 하기 위하여, (ii) 약정기간의 중단, 만료 또는 종료 이전에 진행 중이던 투자(단계적인출투자(Staged-Draw Investment) 포함)를 완료하기 위하여, 그리고 (iii) 본건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 가능한 증권등을 행사, 교환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납입가능약정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이를 명확히 하면, 약정기간의 중단, 만료 또는 종료는 각 조합원이 (x) 비용등의 지급, (y) 유보금의 적립 또는 증액 및 (z) (A) 자금대출, (B) 약정기간의 중단, 만료 또는 종료 시점에 상환되지 아니한, 투자대상 또는 본건 펀드의 자회사의 허용된 차입 또는 (C) 투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부채 투자의 자본 구조 하에서 선순위 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자본출자금을 납입할 의무를 제한하지 아니함. | LPA 3.2 |
| **자금대출** | * 본건 펀드 또는 그 자회사는 본 계약 Sec 2.6(b)(x)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담보부 또는 무담보부의 차입계약(“**자금대출**”)을 수시로 체결할 수 있음. * 해당 자금대출의 기간은 약정기간(Commitment Period)의 종료 이후로 연장될 수 있음. * 자금대출에 관하여 본건 펀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담보로 제공될 수 있음. * 자금대출과 관련하여, Brookfield 관리자는 본건 펀드와 본 계약에 따른 Brookfield 관리자의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본출자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구제수단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 납입가능약정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자금대출에 따른 본건 펀드 또는 그 자회사의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각 조합원은 (i) 납입가능약정금을 조달하고, (ii) 자본출자금을 납입하며, (iii) Brookfield 관리자 또는 신용 공여자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재무 정보를 제공하고, (iv) Brookfield 관리자 및 본건 운용사(Manager)[[12]](#footnote-12)에 합리적으로 협조하며, (v) 자금대출을 실행 및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서류에 날인하고, (vi) 본 조에 따라 신용 공여자가 보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각 신용 공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제3수익자로 간주된다는 데 동의함. * 조합원이 신용 공여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은 해당 조합원의 본건 펀드에 대한 자본출자금으로 간주됨. | LPA 3.3 |
| **탈퇴** | 본 계약에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조합원은 (a) 본건 펀드의 조합원 지위에서 탈퇴하거나, (b) 해당 조합원의 자본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건 펀드에서 회수하거나, (c) 해당 조합원의 자본출자금의 환급금을 제외한 재산을 수령하거나, (d) 본건 펀드로부터 분배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음. | LPA 3.4 |
| **조합원의 책임** | * 유한책임조합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한책임조합원이 자본출자금을 납입하고, 분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의 적용을 전제로, 유한책임조합원은 본건 펀드의 부채, 책임, 계약 또는 의무에 대하여, 본건 펀드, 다른 조합원 또는 본건 펀드의 채권자에게 유한책임 조합원으로서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유한책임조합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한책임조합원은 본건 펀드, 다른 조합원 또는 본건 펀드의 채권자에게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지급된 분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단, Brookfield 관리자는 본건 펀드를 위하여 자신의 재량으로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비용등의 안분 지급을 위하여 분배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어느 유한책임조합원이 본건 펀드 또는 본건 펀드의 채권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분배금을 수령하였다고 결정되는 경우, 관련 법률이나 규제에 따른 어느 유한책임조합원의 반환의무는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의 의무이며, 다른 조합원의 의무가 아님. * 유한책임조합원이 반환한 분배금은 (자본출자금(Capital Contribution)의 납입으로 보지 아니하고) 본건 펀드에 대한 자본의 출자로 취급되며, 해당 금액이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분배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취급됨. * 업무집행조합원은 본 계약에 따라 유한책임조합원이 분배금을 반환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한책임조합원이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유한책임조합원과 같은 시기에 자신이 본건 펀드로부터 수령한 분배금을 반환하여야 함. * 본건 운용사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분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본건 펀드로부터 수령한 인센티브관리수수료를 유한책임조합원이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본건 펀드에 상환하여야 함. * 유한책임조합원은 Sec 10.5에 따른 해산 통지서 제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에는 분배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 유한책임조합원이 반환하여야 하는 분배금의 총액은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의 약정금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함. | LPA 3.5 |
| **미이행유한책임조합원** | * 유한책임조합원(또는 그 계열회사)이 Brookfield 관리자의 통지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자본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미이행유한책임조합원**”) Brookfield 관리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해당 미이행유한책임조합원에게 (i) 미이행 금액 및 회수비용에 대하여 (A) 연 20% 및 (B)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한의 이자율 중 적은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할 수 있고, (ii) 미이행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분배금 또는 지급금을 미이행 금액에 충당되도록 할 수 있음. * 미이행유한책임조합원이 자본출자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Brookfield 관리자는 (i) 본건 펀드의 가액에 대한 변동 없이 미이행유한책임조합원의 조합원계좌부(Capital Account)를 감액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감액되는 금액은 (A) 다른 조합원에게 할당되어야 하며, 이러한 할당으로 인해 해당 조합원의 조합원계좌부가 비례적으로 증액되고, (B) 해당 조합원이 지급 받을 수 있는 투자수익이 증가되며, (ii) 미이행유한책임조합원의 투자자본 또는 지분비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고, (iii) 해당 미이행유한책임조합원의 조합원계좌부의 50% 상당액에 해당하는 해당 미이행유한책임조합원의 대상지분(Interest)을 양도할 수 있으며, (iv) 미이행유한책임조합원의 납입가능약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 Brookfield 관리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자신의 재량으로 미이행유한책임조합원에게 미이행 금액을 대여할 수 있음. 해당 대출에 따른 대출금은 본건 펀드에 바로 지급되어 해당 미이행유한책임조합원의 자본출자금을 구성함. 위 대출에 대하여는 기준금리에 5%를 가산한 이자율이 적용됨. | LPA 3.7 |
| **운용** | * 업무집행사원만이 본건 펀드 운용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유한책임조합원은 본건 펀드 영업에 관여할 수 없음. * 유한책임조합원은 업무집행사원이 본건 펀드의 관리 기관으로 Brookfield 관리자를 지정하고 본건 펀드의 투자 운용사로 본건 운용사를 지정함을 확인함. | LPA 4.1 |
| **수수료** | * 기본관리수수료(Base Management Fee) * 본건 펀드는 본건 운용사(또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계열회사)에게 각 유한책임조합원에 관하여 해당 지급일 전 분기 동안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의 기출자약정금의 평균 일별 잔액의 관련 연간 기본관리수수료율로 계산된 운용수수료를 분기별로 지급함. 기본관리수수료는 대체투자기구, Holding Vehicles이나 본건 펀드의 자회사가 지급할 자회사기본관리수수료 및 대체투자기구기본관리수수료 또는 Holding Vehicle기본관리수수료의 합계액에 의해 해당 금액별로(dollar-for-dollar basis) 공제됨. * 기본관리수수료는 최초모집일(Initial Closing Date)로부터 본건 펀드의 청산이 완료되는 날까지 발생함. * 후속모집일에 본건 펀드가 지급할 기본관리수수료 외에 기본관리수수료는 매 1월 2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각 해당 지급일을 “**지급일**”)에 지급됨. 분기에 미달하는 기간의 기본관리수수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됨. 기본관리수수료에 관한 유한책임조합원의 자본출자금은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의 납입가능약정금을 감액함. 본 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Brookfield 관리자나 그 계열회사는 본건 운용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본관리수수료에 대한 유한책임조합원의 자본출자 의무를 면제, 반환, 감액,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기본관리수수료율은 유한책임조합원별로 그 약정액을 기준으로 (a) $100,000,000 미만의 경우 1%, (b) $100,000,000 이상 $200,000,000미만의 경우 0.95%, (c) $200,000,000 이상 $300,000,000미만의 경우 0.9%, 및 (d) $300,000,000 이상의 경우 0.85%로 함. 다만 조기가입투자자에 대하여는 10% 감액. * 인센티브관리수수료(Incentive Management Fee) * 운용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투자수익 분배 시 본건 펀드는 본건 운용사나 그 계열회사에게 다음에 따라 계산된 인센티브관리수수료를 지급함: (a) 본건 운용사(또는 그 계열회사)가 수령한 누적 인센티브관리수수료가 (i)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의 자본출자금(Bridge Financings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자본출자금은 제외)을 초과하여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분배되는 금액 및 (ii) 해당 유한책임조합원과 관련하여 본건 운용사(또는 그 계열회사)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된 인센티브관리수수료의 합계액의 15%에 이를 때까지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분배될 수 있는 투자수익의 80% 상당액 및 (b) 이후,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분배될 수 있는 투자수익의 15% 상당액. 다만, 해당 시기에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한 누적 분배 금액이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의 자본출자금(Bridge Financings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자본출자금은 제외)의 5% 내부수익률에 달하기 전까지는, 본건 운용사가 인센티브관리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음. | LPA 4.3  LPA 4.4 |
| **비용** | 본건 펀드는 Brookfield 관리자의 재량으로 본건 펀드나 그들의 영업 수행에서 발생한 모든 수수료, 비용 및 책임을 업무집행조합원, Brookfield 관리자, 본건 운용사, 세금부문대표, 자문위원회 구성원 및 각 관련 계열회사 및 그 관련 직원 및 구성원에게 지급 또는 변제해야 하고, 해당 비용에는 설립비용, 운영 비용, 헷징 거래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며 이에 한하지 않음. | LPA 4.5 |
| **면책**  **배상** | *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배상권리자는 본건 펀드 영업에 관한 작위나 부작위에 대하여 본건 펀드,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그 계열회사에게 책임을 지지 않음. *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본건 펀드는 본건 운용사, Brookfield 관리자,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자문위원회의 구성원, 병행투자기구의 운용사, 그 계열회사, 관련 구성원, 직원, 임원, 자문기관이나 대리기관(“**배상권리자**”)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합리적 법률 비용 및 합의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그 손실이나 손해를 배상함. * 위 면책이나 배상은 자문위원회의 구성원, 업무집행조합원이나 그 임원이 아닌 배상권리자가 본건 펀드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뢰하여 해당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하지 않거나 해당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해당 배상권리자가 사기, 중과실, 신의칙 위반, 고의적 위법행위, 본 계약이나 본건 펀드에 대하여 수탁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인 배상권리자가 불성실하게 해당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나 그 임원인 배상권리자가 사기, 신의칙 위반, 고의적 위반이나 중과실로 해당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하였다는 케이만 아일랜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위 배상은 본건 펀드 재산으로부터/한도로 이행됨. 유한책임조합원은 납입가능약정금을 초과하여 배상 의무의 해당 분에 대한 자본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으며 개별 책임을 지지 않음.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은 본건 펀드의 배상 의무에서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하여 배당 받은 금원을 반환하여야 함. | LPA 4.7  LPA 4.8 |
| **후속 모집** | * Brookfield 관리자는 그 재량으로 최종모집일까지 추가로 유한책임조합원을 승인할 수 있음(추가유한책임조합원이 본건 펀드에 승인되는 최초모집일 이후 각 일자를 “**후속모집일**”). 각 추가유한책임조합원은 본건 펀드에 대한 승인 이후 Brookfield 관리자가 특정하는 날에 (i) 해당 추가유한책임조합원의 자본출자금에 (ii) 5% 상당의 실효 연 요율(effective annual rate)로 자본출자금납입일까지 비용등에 관하여 출자된 금액의 평균 일별 잔액(average daily balance)상 조정 이자의 합계 상당액을 본건 펀드에 출자하여야 함. 다만, 이전 모집에 참가한 유한책임조합원이 최소수익[[13]](#footnote-13)을 받지 못한 경우, 추가유한책임조합원은 이전 모집에 참가한 유한책임조합원이 최소수익을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해당 추가유한책임조합원의 출자일까지 투자자본을 구성하는 해당 추가유한책임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의 평균 일별 잔액상 조정 이자를 각 유한책임조합원을 위하여 본건 펀드에 출자하여야 함(위 (ii) 및 본 단서의 조정 이자를 “**조정이자**”). 조정이자 관련 출자는 자본출자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추가유한책임조합원의 납입가능약정금을 감소시키지 않음. * 기본관리수수료에 할당되는 자본출자금은 조정이자 관련 출자금의 할당분과 함께 (i) 우선 최초모집일 현재 모든 유한책임조합원이 본건 펀드에 가입되었더라면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이 기본관리수수료에 관하여 출자하였을 금액을 이전 모집에 참가한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배당하고 (ii) 이후 본건 운용사에게 지급됨. 위 (ii)에 따라 출자된 조정이자는 해당 조합원이 해당 조합원의 최소수익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기초로 안분하여 이전 모집에 참가한 조합원에게 배당됨. 그 외 자본출자금으로부터의 수익은 해당 후속모집일 전 관련 순 자본출자금을 기초로 안분하여 이전 모집에 참가한 조합원에게 배당됨. 조정이자에 할당되는 부분 외에 본 조에 따라 출자된 모든 금액은 조합원의 관련 납입가능약정금에 가산되고 본건 펀드에 의해 재인출될 수 있음. 추가유한책임조합원은 해당 추가유한책임조합원의 본건 펀드에 대한 승인 전에 또는 해당 승인 전 기간에 할당되는 발생 이자의 기 승인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한 배당에 참가할 수 없음. * 후속모집일에, 투자의 공정시장가격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관련한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Brookfield 관리자나 본건 운용사는 추가유한책임조합원을 해당 투자로부터 배제하거나 해당 투자에서 해당 추가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조정하거나 추가유한책임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변경을 반영한 금액을 본건 펀드에 지급하도록 할 수 있고, 본건 펀드가 어느 투자에 관한 선취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가 해당 투자의 만기까지 분할된 경우에서와 같이 조정하여 해당 수수료를 본건 펀드에 지급하도록 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최초모집일 이후 유한책임조합원의 가입이나 그 약정금의 증액 또는 해당 일 이후 병행투자기구의 추가 조달의 결과로 약정금이나 병행투자기구의 약정금 비율에 변경을 야기하는 경우, Brookfield 관리자는 해당 신규나 추가 약정금을 고려하여 본건 펀드, 대체투자기구, 병행투자기구 및 유한책임조합원 사이에 투자의 예정된 할당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존 투자를 재할당할 수 있음. 이 경우 Brookfield 관리자는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i) 해당 조합원이나 구성원에 대한 재분배를 위해 본건 펀드나 대체투자기구와 해당 병행투자기구 사이에서 현금의 이전; (ii) 금융, 회계 및 조세 목적을 위해 본건 펀드나 대체투자기구와 해당 병행투자기구 사이에서 투자의 일부 매각 거래; (iii) 투자 장부 및 기록상 반영을 위해 보유 비율 변경. | LPA 4.9 |
| **병행투자기구**  **추가펀드**  **이해상충** | * 병행투자기구 * BID III 및 BID III-A가 설립되었고 Brookfield 관리자는 본건 펀드와 병렬적으로(side-by-side basis) 투자하는 하나 이상의 추가 유한책임조합이나 유사 투자기구(Sec 4.5(a)에 규정된 AIFMD 펀드를 포함)를 설립할 수 있음. 법령, 조세, 규제, 구조, 준수, 투자 상세나 기타 특정 고려사항을 조건으로 실행가능한 최대한에서 다음의 조항이 본건 펀드 및 병행투자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적용됨. * (i) 본건 펀드의 모든 투자는 본건 펀드가 보유한 증권등의 동일 종류나 유형으로 병행투자기구에 의하여도 이루어져야 하고, (ii) 본건 펀드 및 병행투자기구의 투자 및 회수는 가능한 동시에 동일 조건으로 본건 펀드의 조합원과 병행투자기구의 조합원 및 실소유자(beneficial owner) 각자의 총 약정금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iii) 총 약정금의 비율에 기조한 투자 제한이나 금지는 본건 펀드나 병행투자기구의 투자금 총액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iv) 본건 펀드, 대체투자기구 및 병행투자기구는 공동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관련 행위를 고려할 때 업무집행조합원(또는 Brookfield 관리자)은 본건 펀드, 대체투자기구 및 병행투자기구의 (직간접적) 지분 소유자의 이익을 전체로서 고려할 수 있으며 특정 지분 소유자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본건 펀드 및 병행투자기구(오직 Brookfield 약정금과 관련하여 설립된 병행투자기구만을 의미함)는 본건 펀드나 해당 병행투자기구가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할 기본관리수수료나 그 유사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설립비용, 본건 펀드나 병행투자기구 관련 비용, 투자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을 본건 펀드 조합원의 각 총 약정금 및 각 병행투자기구의 투자자 또는 실소유자의 총 약정금을 기초로 비례하여 분담하여야 함. 다만, 본건 펀드 또는 병행투자기구에만 관련되는 본건 펀드나 해당 병행투자기구가 부담할 중요 비용은 본건 펀드나 해당 병행투자기구의 규율 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급될 수 있음(요구될 수는 없음). Sec 4.3(c)나 4.3(d)에 따른 기본관리수수료의 조정은 본건 펀드의 유한책임조합원의 기출자약정금 및 병행투자기구의 조합원이나 수익자의 기 출자 약정금을 기초로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함. * Brookfield 관리자는 본건 펀드 및 병행투자기구 사이의 투자 할당 및 위 (i) 내지 (iii)에 따른 할당을 위한 관련 양도를 포함하여 본 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권장되는 조치를 취할 재량을 가질 뿐만 아니라, (i) 유한책임조합원의 대상지분을 감소시키거나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을 본건 펀드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되는 것을 중단시키고 그와 관련하여 해당 자(者)를 동등한 지분 및 약정금으로 병행투자기구의 조합원이나 사원으로서 승인되도록 하거나 (ii) 병행투자기구 내 투자자의 지분을 감소시키고 그와 관련하여 해당 자(者)를 동등한 지분 및 약정금으로 본건 펀드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승인되도록 할 수 있음. * 추가펀드   유한책임조합원의 2/3 결의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본건 운용사나 Brookfield 관리자는 직접 또는 그 계열회사로 하여금 촉발일(Trigger Date)[[14]](#footnote-14) 전에 본건 펀드와 투자 목적, 투자 전략 및 목표 수익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추가펀드에 제3자 투자자를 승인하는 최초 조달을 하거나 추가 펀드를 위한 투자활동을 개시할 수 없음.   * 이해상충   유한책임조합원은 Brookfield가 지원하는 특정 기반시설 지분 펀드(“**인프라지분펀드**”)를 포함하여 Brookfield가 현재 및 장래 본건 펀드와 중복되는 투자 목적을 가지는 추가펀드, 기타 투자기구(총칭하여 “**Brookfield 펀드**”)에 업무집행조합원이나 운용사로서 행위하거나 참가하거나 거래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행위함을 인지함. 촉발일까지 자문위원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본건 펀드의 투자 목적 범위 내에 있는 Brookfield 관리자, 본건 운용사나 주요인물이 확인한 모든 장래 투자 기회는 다른 자(者)에게 제공되기 전에 본건 펀드에게 제공되어야 하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함: (i) BID I, BID Euro I, BID II, BID Euro II에게 제공된 투자 기회; (ii) Brookfield 펀드 등을 통해 Brookfield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투자와 관련하여 우선 또는 독점 주선으로부터 파생된 투자 기회; (iii) 본건 펀드에 적합하면서도 인프라지분펀드에도 적합한 투자 기회인 경우 인프라지분펀드가 본건 펀드에 우선함; (iv) 본건 펀드에 적합하면서도 Brookfield 펀드와 투자 목적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투자 기회는 규모, 속성, 유형, 목적, 전략, 목표 수익율, 가용 출자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본건 운용사가 공정하고 공평한 것으로 보는 기초에서 할당됨. | LPA 4.10  LPA 4.11  LPA 4.12 |
| **자문위원회**  **유한책임조합원총회** | * 자문위원회 * Brookfield 관리자는 Brookfield 관리자와 계열 관계가 아닌 유한책임조합원 및 병행투자기구 투자자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본건 펀드의 자문위원회를 설립함. 유한책임조합원이나 병행투자기구의 유한책임조합원인 운용투자기구는 Brookfield 관리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운용투자기구의 투자자를 그의 대표로 지정하는 한 자문위원회에 자신의 대표자를 둘 수 있음. 유한책임조합원은 그 계열회사와 함께 자문위원회에 1명을 초과하는 대표자를 둘 수 없음. * 자문위원회는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의무나 제한의 동의, 승인, 포기나 자문사법에서 요구되는 동의 및 기타 본건 펀드에 관하여 Brookfield 관리자가 요청하는 자문을 제공함. * 자문위원회는 본건 펀드 영업이나 운용에 대한 권한이 없음. * 자문위원회는 의결 정족수 과반수에 의한 서면 동의(전자 메일 포함)로 자문위원회 구성원 회의 없이 결의할 수 있음. * 자문위원회 주요 역할 및 결의사항 * Group A Key Person 또는 Group B Key Person의 추가 지정(Brookfield 관리자가 지명하고, 자문위원회가 승인함) (LPA 1.101 및 1.102) * 헷징 또는 파생 거래에 대한 동의 (LPA 2.6(c)(xiii)) * 약정기간의 만료 또는 종료 이후 총약정금의 15%를 초과하는 자본출자금 납입에 대한 동의 (LPA 3.2 (i)) * 관련용역요율(Affiliate Service Rates)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비용에 관리 수수료 5%를 가산한 금액을 제외한 요율에 대한 동의 (LPA 4.12(b)) * 잠재적 투자 기회에 대하여 본건 펀드에 대한 제안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한 동의 (LPA 4.12(c)) * 관련자(Related Person)가 발행한 증권등에 대한 투자, 관련자로부터의 투자 인수 또는 관련자와의 매각 또는 합병 투자에 관한 동의 (LPA 4.12(d)) * 보호대출(Protective Loan)(출자통지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Brookfield 또는 그 계열사가 실행하는 대출을 말함)의 상환과 관련하여 공정한 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정인에 대한 승인 (LPA 4.12(f)) * 자문사법에 따라 요구되는 동의의 부여(LPA 4.13) * 본건 펀드에 관하여 Brookfield 관리자가 요청하는 자문 제공(LPA 4.13) * Brookfield 관리자가 적합하다고 결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Brookfield 관리자와 협의(LPA 4.13) *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한도약정금(Limitation Commitments)의 15%를 초과하는 투자에 대한 동의 (LPA 5.4(a)) * 증권등의 분배와 관련하여 Brookfield 관리자의 공정시장가치 결정에 대한 평가의 승인 (LPA 6.2(c)) * 유한책임조합원총회 * 유한책임조합원 총회는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유한책임조합원들이 의결권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과반수 또는 2/3 투표로 의결함. * 유한책임조합원총회 주요 역할 및 결의사항 * Cause Event (어느 자(者)와 관련하여, 해당 인의 기망, 중과실 또는 미국 연방 증권법 위반 등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를 말함)를 원인으로 하는 운용계약(Management Agreement) 또는 관리계약(Administration Agreement)의 해지에 대한 승인(과반수 투표로 의결함) LPA (2.6 (a) (ii), (iii)) * Section 11.1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의 대상지분 양도에 대한 승인(과반수 투표로 의결함) (LPA 2.6(v)) * 주요인물관련사유(Key Person Event)(약정기간이 만료 또는 종료되기 전에 Group A Key Person 및 Group B Key Person이 Brookfield 인프라그룹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함) 발생 시 주요인물(Key Persons)의 대체 또는 약정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2/3 투표로 의결함) (LPA 3.2(j)) * Brookfield 관리자 및 본건 운용사가 Brookfield 이외의 자에 의하여 통제될지 여부에 관한 결정(LPA 4.1(a)) * 추가펀드(Additional Fund)에 대한 제3의 투자자의 가입 승인(2/3 투표로 의결함) (LPA 4.11) * 본건 펀드의 해산과 관련된 의결(2/3 투표로 의결함)(LPA 10.1 (b), (e)) * 본건 펀드 청산 관재인(liquidating trustee)의 선정(LPA 10.2) * 업무집행조합원의 자발적 탈퇴 또는 제3자에 대한 지분 양도에 대한 승인(과반수 투표로 의결함) (LPA 11.1(a)) * 후임 업무집행조합원 선임 및 후임 본건 펀드 관리자 승인 관련 결정(각 과반수 투표로 의결함) (LPA 11.1 (c), (d)) * 본 계약 어느 조항의 포기 또는 변경(과반수 투표로 의결함) (LPA 14.3) * LPA 14.3의 변경(2/3 투표로 의결함) (LPA 14.3) * 소집이나 투표 통지는 10영업일 전에 결의사항을 포함한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함. 유한책임조합원은 유선 회의나 기타 유사한 통신 수단으로서 총회에 참석할 수 있음. | LPA 4.13  LPA 4.14 |
| **투자** | * 본건 펀드에 대한 투자 및 단기투자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은 본건 운용사에게 귀속함. * 대체투자기구 * 본건 운용사가 규제, 조세, 투자 목적 등 제반 고려사항을 고려하여, 하나 이상의 조합원(Brookfield Asset Management Inc.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Brookfield**”) 포함)이 대체투자기구를 통하여 잠재적 투자 또는 기존 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Brookfield 관리자는 본건 펀드 외부에서 그와 같은 투자구조를 구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또는, Brookfield 관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조합원의 계열회사에게) 투자자에게 유한 책임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본건 펀드에 갈음하여 또는 추가로 해당 투자 대상 자산에 투자하는 대체 투자 기구(“**대체투자기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대체투자기구는 Cayman Island, Delaware, Ontario, 캐나다 또는 미국 이외에 설립될 수 있음. Brookfield 관리자가 대체투자기구를 통하여 신규 투자를 실행하거나 기존 투자자를 재구조화하는 경우, 각 해당 조합원(또는 Brookfield 관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조합원의 계열회사)은 해당 대체투자기구의 조합원, 출자자, 수익자 등으로 승인되며, (경우에 따라) 본건 펀드에 대한 출자와 동일한 조건(수수료 포함)으로 해당 대체투자기구에 직접 출자함. 이에 따른 대체투자기구에 대한 직접 출자가 있는 경우 (본건 펀드에 출자하였다면 감소하였을 납입가능약정금 금액만큼) 납입가능약정금이 감소함. Brookfield 관리자는 해당 조합원에게 대체투자기구에 대한 일부 출자를 대출의 형식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이에 따른 대출은 본 계약상 채무(indebtedness)를 구성하지 아니함). Brookfield 관리자가 대체투자기구를 이용하여 기존 투자를 재구조화하는 경우 Brookfield 관리자는 (x) 투자자(유한책임조합원)의 대상지분을 감소시키거나 없앤 다음, 해당 투자자가 대체투자기구의 출자자, 사원, 수익자 등이 되도록 할 수 있으며, (y) 투자자가 하나의 대체투자기구에 대하여 보유하는 지분을 감소시키거나 없앤 다음, 해당 투자자가 다른 대체투자기구의 조합원, 출자자(member), 또는 소유자(holder)가 되도록 할 수 있음. 법률, 조세, 규제, 투자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허용되는 한, 각 조합원 또는 해당 조합원이 투자 참가를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Holding Vehicle은 (A) 대체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의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해당 조합원 또는 Holding Vehicle이 본건 펀드를 통하여 투자하였으면 보유하였을 경제적 이익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며, (B) 분배, 순이익/순손실의 할당, 환급금에 관한 본 계약의 조항은, 마치 해당 투자가 본건 펀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동일하게 적용되며, (C) 대체투자기구의 설립/설정 서류는 본건 펀드의 것과 주요한 측면에서 동일하여야 하며, (D) 부속합의서를 통하여 어느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리는 합리적으로 적용 가능한 한,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이 참여하는 대체투자기구에 관하여도 준용됨. Brookfield 관리자는 대체투자기구의 설립/설정 서류를 해당 대체투자기구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위하여 대리하여 날인할 수 있음. Brookfield 관리자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어느 대체투자기구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별도의 펀드 계약 체결 없이 자동적으로 해당 대체투자기구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Brookfield 관리자는 대체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의 완결 이후 즉시 대체투자기구에 참여한 각 투자자에게 해당 대체투자기구의 설립/설정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야 함. 법률, 규제, 조세 등 제반 고려 사항의 제한 하에서, 해당 대체투자기구를 통한 투자회수(divestment)는 최대한 본건 펀드를 통한 투자회수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함. Brookfield 관리자는 본 대체투자기구 관련 조항의 의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함. * 본건 운용사의 재량에 따라, 대체투자기구는 (해당 대체투자기구를 통한 투자금액에 따라) 대체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투자자와 관련한 관리수수료(“**대체투자기구기본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음. 해당 대체투자기구기본관리수수료는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펀드가 해당 투자자와 관련하여 지급할 기본관리수수료의 금액을 감소시킴. 법률, 조세, 규제, 투자 등 제반 고려 사항이 달리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본 계약에 따른 포기, 수정, 해지, 변경은 투자자의 별도의 조치 없이도 대체투자기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본 조항에 따른 대체투자기구의 설립과 관련하여, Brookfield 관리자는 (x) 그 계열회사로 하여금 대체투자기구의 관리자가 되도록 할 수 있고, (y) 자금대출이 유지되고 있는 한 투자자들로 하여금 대체투자기구에 대한 출자금을 담보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또한 Brookfield 관리자는 제반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건 펀드의 기존 투자를 대체투자기구로 이전하거나, 투자자의 본건 펀드 지분을 대체투자기구로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Holding Vehicle * Brookfield 관리자는 조세, 법률, 규제,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또는 Brookfield 관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계열회사)이 대상지분을 Holding Vehicle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청할 수 있음. Brookfield 관리자가 신규 투자 또는 기존 투자를 Holding Vehicle을 통하여 구조화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Holding Vehicle로 출자하고, 해당 Holding Vehicle이 (해당 조합원에게 요구되는 본건 펀드에 대한 자본출자에 준하여) 본건 펀드 또는 대체투자기구로 직접 출자함. 이와 같은 출자는 (해당 자본출자가 본건 펀드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납입가능약정금을 감소시킴. Brookfield 관리자는 해당 조합원에게 Holding Vehicle에 대한 출자 일부를 대출의 형태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해당 대출은 본 계약상 차입으로 간주되지 않음). Brookfield 관리자가 기존 투자를 Holding Vehicle을 사용하여 재구조화하는 경우, Brookfield 관리자는 (A) 해당 투자자의 대상지분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여, 해당 투자자가 Holding Vehicle의 수익자가 되도록 하거나, (B) 대체투자기구 또는 Holding Vehicle의 어느 투자자의 지분을 감소시켜서 해당 투자자가 다른 Holding Vehicle의 조합원, 출자자(member) 또는 소유자(holder)가 되도록 할 수 있음. 부속합의서에 따라 어느 투자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리는 합리적으로 적용 가능한 한, Holding Vehicle에 관하여도 준용됨. Brookfield 관리자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어느 Holding Vehicle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별도의 펀드 계약 체결 없이 자동적으로 해당 Holding Vehicle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Brookfield 관리자는 Holding Vehicle의 설립/설정 서류를 해당 Holding Vehicle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위하여 대리하여 날인할 수 있음. Brookfield 관리자는 Holding Vehicle를 통한 투자의 완결 이후 즉시 Holding Vehicle에 참여한 각 투자자에게 해당 Holding Vehicle의 설립/설정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야 함. 조합원이 Holding Vehicle을 통하여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Holding Vehicle은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조합원이 Holding Vehicle을 통하지 않는 경우에 보유하는 경제적 이익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함. 분배 및 환급금과 관련된 본 계약의 조항과 관련하여, Holding Vehicle이 해당 금액을 수취한 경우, 해당 Holding Vehicle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조합원이 해당 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해석됨. * Brookfield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Holding Vehicle은 Holding Vehicle을 통하여 투자하는 투자자와 관련한 관리수수료(“**Holding Vehicle 기본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음. 해당 Holding Vehicle 기본관리수수료는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펀드가 해당 투자자와 관련하여 지급할 기본관리수수료의 금액을 감소시킴. 법률, 조세, 규제, 투자 등 제반 고려 사항이 달리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본 계약에 따른 포기, 수정, 해지, 변경은 투자자의 별도의 조치 없이도 Holding Vehicle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본 조항에 따른 Holding Vehicle의 설립과 관련하여, Brookfield 관리자는 자금대출이 유지되고 있는 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Holding Vehicle에 대한 출자금을 담보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또한 Brookfield 관리자는 제반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자자의 본건 펀드 지분을 Holding Vehicle로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Blocked Investment[[15]](#footnote-15)와 관련하여, Brookfield 관리자는, 본건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i) 대체투자기구를 통하여 이러한 Blocked Investment를 (직, 간접적으로) 이행하고, 각 유한책임조합원으로 하여금 미국연방소득세 목적에 따라 기업으로 분류되는 Holding Vehicle을 통하여 해당 Blocked Investment와 관련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도록 하거나, (ii) 본 건 펀드 또는 대체투자기구로 하여금 해당 Blocked Investment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음. * Feeder Fund(자펀드). Brookfield 관리자, 그 자회사 또는 Person[[16]](#footnote-16)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 본건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펀드를 설정 또는 설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음. 여기에는 초기투자자들에게 본건 펀드가 부담할 비용에 관한 채권을 발행(issue notes)하는 자펀드가 포함될 수 있음. 자펀드 투자자는 본건 펀드에 간접적인 지분을 보유함. 본 계약의 목적상 자펀드인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자펀드가 모든 지분을 소유하는 유한책임조합원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서의 “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이란 그러한 자펀드의 조합원 또는 수익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됨. 업무집행사원 및/또는 Brookfield 관리자는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의무는 아님). *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서, 자펀드에 의한 의결권의 분리행사(불통일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자펀드의 수익자들이 비례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자펀드의 일부 수익자에 의한 불이행에 따라 자펀드에 의한 불이행이 있는 경우, 자펀드에 대한 불이행의 효과를 비례적으로 적용; * 배제 및 탈퇴와 관련하여, 자펀드의 수익자가 본건 펀드에 직접적인 약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 및 * 기타 필요한 사항 | LPA 5.1 |
| **재투자** | * 약정기간 중 어느 투자에 관한 처분에 따라 투자수익금이 분배되는 경우, Brookfield 관리자는 재량에 따라 해당 분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해당 투자자의 납입가능약정금을 회복시킬 수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투자의 투자자본 반환과 관련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분배된 총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음. * 시기를 불문하고, 투자수익금이 분배되는 경우, Brookfield 관리자는 재량에 따라 해당 분배금을 해당 투자자의 납입가능약정금에 가산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금액은 (i) 해당 투자수익금의 총액 및 (ii) 해당 투자자가 비용등(기본관리수수료 포함)의 분담비율과 관련하여 출자한 자본출자금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LPA 5.2 |
| **투자제한** | * 약정기간 중에는, 자문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아래에 대한 투자가 금지됨. * 어느 한 투자의 한도약정금이 15%를 넘는 경우. 다만, (A) 본건 펀드는 한도약정금의 20%를 초과하여 단일 투자 대상에 투자할 수 있고, (B) 만약 어느 단일 투자 대상에 이루어진 후속투자 제공이, 해당 단일 투자 대상에 이루어진 후속투자금액과 합산하여 한도약정금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본건 펀든느 해당 단일 투자 대상에 후속투자를 할 수 있음. 나아가 본건 펀드에 의한 어느 단일 투자 대상에 대한 브릿지대출 제공이, 해당 단일 투자 대상에 이루어진 투자금액과 합산하여 한도약정금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본건 펀드는 해당 단일 투자 대상에 브릿지대출을 제공할 수 있음. * 한도약정금의 20%를 초과하여 OECD 국가 이외의 지역에 투자. 또한 한도약정금의 10%를 초과하여 OECD 국가 아닌 어느 단일 국가에 대한 투자 역시 이루어질 수 없음. * 본건 펀드가 관리수수료 또는 carried interest를 지급할 것이 요구되는 블라인드 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위에 대한 판단은 해당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수익금의 원금(이자 제외)에 대한 분배를 고려하여 해당 투자에 실제 투자된 금액(이자 제외)을 기준으로 판단함.   * 자문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i) 최종 결산일 이전에 체결되거나 (ii)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미결제 상태인 투자자의 납입가능약정금으로 담보되는 차입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건 펀드의 차입은 한도약정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회사간 채무 또는 본건 펀드가 투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담보되는 차입은 해당 산정에서 제외됨. | LPA 5.4 |
| **투자에 대한 분배** | * 투자에 대한 투자수익금은 지분비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분배되며, 다만, 조합원들 중 투자자(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해당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인센티브관리수수료를 차감한 다음 분배됨. | LPA 6.1 |
| **증권의 분배** | * 본건 펀드의 청산 시 또는 (해당 증권 분배 수령에 동의한) 투자자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증권으로 현물 분배 가능. * 해당 증권 분배가 있는 경우, 본건 펀드가 해당 증권을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하였다는 것을 가정하여, 해당 금액이 현금으로 분배된 것으로 취급됨. * 대상 증권의 공개 거래 시장에 없어서 Brookfield 관리자에 의하여 결정된 공정시장가치는 자문위원회로 송부되어야 하고, 자문위원회의 반대가 있는 경우, (1) 일차적으로는 자문위원회와 Brookfield 관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건 펀드의 비용으로 선정된 투자은행 또는 평가기관의 결정에 따름. | LPA 6.2 |
| **회계 할당** | * 일반 원칙. 본건 펀드의 순수입 또는 순손실을 구성하는 수입, 수익, 손실, 비용에 관하여, 연방소득세법 목적상 각 조합원의 특별한 할당 비율 및 그에 따른 각 조합원의 조합원계좌부에 대한 조정을 정하는 것임. 아래 특별할당은 일반할당에 선행하여 적용됨. * 일반할당 * 가상적 청산. 각 조합원의 조합원계좌부 잔액은 각 회계연도 연말을 기준으로 아래 (i)에서 (ii)를 차감한 금액(음수가 될 수 있음. 다만 음수가 된다고 하여도 법률상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에 관하여 조합원의 회복 의무는 없음)으로 정해짐.  1. 해당 회계연도 말일에 자산을 매각하고, 채무를 변제하고, 잔액을 분배하였을 때 해당 조합원이 수취하였을 가상적 청산 금액 2. (A) 해당 조합원이 본건 펀드에 출자할 의무가 있는 금액, (B) 펀드최소금액 중 해당 조합원의 비율에 따른 금액, (C) 조합원비소구부채최소금액 중 해당 조합원의 비율에 따른 금액[*LK: (B) 및 (C)는 모두 미국 세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임.*]의 합계  * 손실한도. 조합원에게 할당되는 본건 펀드의 비용 및 손실은, 해당 조합원에게 조정된조합원계좌부결손[[17]](#footnote-17)을 고려하지 않고, 할당된 최고 금액윽 초과할 수 없음. 조정된조합원계좌부결손은 조합원들에게 할당되지 않고 업무집행사원의 부담으로 함. * 특별할당: 미국 세법에 따른 펀드최소금액, 조합원비소구부채, 비소구공제 등에 관한 조정. | LPA 7 |
| **회계 세무 관련** | * 본건 펀드와 기타 법인(other entities)에 관하여 지급된 조세   본건 펀드 또는 Taxable Subsidiary가 직·간접적으로 분배 또는 할당을 수령하고, 해당 항목에 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거나 조세가 납부된 경우, 본건 펀드 또는 해당 Taxable Subsidiary는 해당 조세에 관하여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각 조합원은 그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른 분배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됨.   * 본건 펀드에 의하여 지급된 조세   본건 펀드는 각 조합원에게 지급 내지 분배할 금액으로부터 법률에 따른 원천징수를 수행할 수 있음. 어느 조합원에 관하여 또는 어느 조합원의 본건 펀드에의 참여로 인하여 해당 조세가 납부될 것이 요구되는 조세가 있는 경우, Brookfield 관리자는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해당 조세를 해당 조합원에게 할당할 수 있음. 할당의 방식은 (i) 해당 조합원의 분배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다만 차감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은 해당 조합원에게 분배된 것으로 간주됨) 또는 (ii) 해당 조합원이 분배 이전에 본건 펀드에 해당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음. | LPA 9.5 |
| **해산사유** | * 본건 펀드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경우 종료되고 청산 및 해산절차가 개시됨: * Section 2.4에 따라 본 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 * 2/3 이상의 유한책임조합원이 표결한 Brookfield 관리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Brookfield 관리자가 합리적인 판단 하에 법령 또는 규정의 변경이 본건 펀드에 대하여 중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 75% 이상의 유한책임조합원이 표결한 유한책임조합원의 결정이 Brookfield 관리자 및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서면 통지된 경우; * 종국판결이 아닌 법원의 1심 판결로 인한 Cause Event가 발생하여 유한책임조합원이 2/3 결의를 거쳐 Brookfield 관리자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서면통지한 경우 * 약정기간 이후, 모든 본건 펀드 자산의 매각 또는 그 외 처분이 있는 경우; * 본건 펀드에 대한 관할 법원의 청산 및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 또는 * 유한책임조합법의 적용 조항에 따라 해산 없이 본건 펀드의 영업이 수행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한책임조합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 LPA 10.1 |
| **Winding Up** | * 본건 펀드의 winding-up이 개시될 경우, 본건 펀드는 해산되지 않음. 그러나 본건 펀드는 기존에 존재하는 계약의 이행 및 본건 펀드의 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활동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하여야 함. 그리고 Brookfield 관리자는 업무를 종결하고 그의 자산을 청산하여야 함. * 본건 펀드의 winding-up 및 청산절차 동안, 조합원들은 본 계약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순이익, 순손실 및 그 외의 항목을 분배함. | LPA 10.2 |
| **청산** | * 본건 펀드의 winding-up 및 청산으로 인한 수입은 다음과 같이 분배됨: * 본건 펀드의 채권자에 대한 의무의 이행(본건 운용사에 대하여 미지급된 기본관리수수료를 포함함). 유보금은 Brookfield 관리자(또는 청산인, 해당할 경우)에게 지급되고, 그는 예상된 우발채무, 조건부 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해당 유보금을 보유함. Brookfield 관리자가 결정한 적정 기간의 만료 시, 위의 채무를 충당하고 남은 유보금은 아래에 따라 분배됨 * Section 6.1 및 6.3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됨 * 어떠한 조합원도 본건 펀드의 해산에 따른 현금을 제외한 재산을 요구할 권리를 갖지 않음. | LPA 10.3 |
| **환급금** | * 환급금결정일에, (i) 유한책임조합원이 충분분배금액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ii) 본건 운용사가 유한책임조합원과 관련하여 초과인센티브관리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본건 운용사는 본건 펀드에게 (A) 유한책임조합원과 관련하여 본건 운용사가 수령한 초과인센티브관리수수료 및 (B) 수령하였어야 할 충분분배금액 중 큰 금액(“**환급금**”)을 환급하여야 함. * 환급금은 (i) 본건 운용사에게 인센티브관리수수료로 지급되는 총 금액 중 (ii) (A) (i)에 따라 지급한 총 금액에 (B) 캐나다 온타리오에서의 영업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연방세 및 주(州)세의 가장 높은 포괄유효한계세율(combined marginal effective rate)을 곱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한도로 함. * Section 10.4에 따른 본건 운용사의 의무와 관련하여, Brookfield Asset Management Inc.는 본건 펀드 및 유한책임조합원들을 위하여 첫번째 결산일 이전에 Exhibit I 양식에 의한 보증을 제공함.[*LK: 현재 Exhibit I은 공란임]* * 본건 운용사에 의하여 환급된 환급금은 해당 금액이 상환되어야 할 각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분배되어야 함. 분배된 환급금은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 투자수익금이 분배된 것으로 처리됨. | LPA 10.4 |
| **탈퇴 및 업무집행조합원에 의한 이전** | * 업무집행조합원은 유한책임조합원과반수표결로 인하여 승인받지 않는 한, 본건 펀드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하거나 그의 대상지분을 이전할 수 없음. * 그러나 업무집행조합원은 유한책임조합원의 동의 없이 (i) 법인 등 다른 주체로 전환될 수 있거나 (ii) 제3자가 본 계약, 인수계약 등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를 인수하는 한 대상지분을 하나 이상의 계열회사에게 이전할 수 있음. * 본 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산(Bankruptcy)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유한책임조합원법 Section 36(7)이 규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업무집행사원이 본건 펀드의 업무집행 사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본건 펀드는 해산 없이 존속함. | LPA 11.1 |
| **유한책임조합원에 의한 이전의 제한** | * 어떠한 유한책임조합원도 대상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Brookfield 관리자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이전할 수 없고, (b)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이 모든 대체투자기구에 대한 그의 지분을 동일한 양수인 또는 조합원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유한책임조합원도 대상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음. * 유한책임조합원이 Brookfield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또는 Article 12의 다른 조건을 충족함이 없이 대상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경우, 이는 효력을 갖지 못하고, Brookfield 관리자는 이를 재양도할 수 있고, 재양도가격은 해당 재양도 시점의 조합원계좌부와 동일한 금액임. | LPA 12.1 |
| **대체된 유한책임조합원** | * 유한책임조합원의 양수인은 (i) Brookfield 관리자가 양도에 동의하고, (ii) 양수인이 양도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납입가능약정금을 납입할 의무를 인지하고 있다는 서류, 양수인이 본 계약에 구속을 받는다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 (iii)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양도 및 대체와 관련하여 발생한 예상 비용을 본건 펀드에게 지급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대체된 유한잭임조합원이 될 수 있음. * 대체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은 양수인은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이 본 계약에 따라 대상지분과 관련된 분배에 관한 권리만을 보유하고, 본건 펀드의 사항에 대한 의결권, 법률이 정하는 최대한도까지 본건 펀드의 회계 장부 조사를 비롯한 유한책임조합법 및 본 계약상의 어떠한 유한책임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 LPA 12.3 |
| **규제의 예외** | * Brookfield 관리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본건 펀드에 참여하는 것이 (i) 본건 펀드, Brookfield 관리자 등에 의한 증권법(Securities Act) 등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ii) 본건 펀드가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에 따른 투자회사로 등록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증권법(Securities Act)에 따른 지분공모(offering of Interest)를 등록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iii) 본건 펀드 등에 대하여 법령, 규정 등에 따른 신탁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iv) 본건 펀드, 업무집행조합원, Brookfield 관리자 등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으로 하여금 본건 펀드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LPA 13.4 |
| **일반 조항** | * **본건 펀드 재산의 소유권**: 본건 펀드의 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항상 본건 펀드, 그가 지정한 자, Brookfield 관리자(본건 펀드를 위하여) 또는 Brookfield 관리자가 지정한 자의 명의로 보유함. * **수정**: 본 계약은 Brookfield 관리자 및 유한책임조합원과반수표결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수정될 수 없고, 본 계약의 조항은 위 동의가 없는 한 면제될 수 없음. 다만, (i) 추가유한책임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의 대상지분 양도에 대한 승인, 유한책임조합원의 허용된 탈퇴를 반영하기 위한 경우, (ii) 본건 펀드의 성명을 수정하는 경우, (iii) Brookfield 관리자가 어느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도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모든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또는 (iv) 후속모집일 현재 가입이 승인된 추가유한책임조합원의 가입승인과 관련하여, Brookfield 관리자가 해당 추가유한책임조합원과 협의된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거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유리하고 이러한 수정이 통지 20일 이내에 유한책임조합원의 20% 표결에 의한 반대에 부딪히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의 추가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Brookfield 관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 **준거법 등**: 본 계약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은 Cayman Islands의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이해됨.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Cayman Islands의 Grand Court를 관할법원으로 함. * **승계인 및 양수인**: 본 계약의 규정은 승계인 및 허용된 양수인을 구속함. * **Side letter**: Brookfield 관리자는 자신을 위하여 또는 본건 펀드를 위하여,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어느 자의 승인 없이, 하나 이상의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병행투자기구의 투자자와 side letter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Side letter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Side Letter**”)은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조건(특정 투자에 관한 우선적인 경제적 조건, 우선적 공동투자권리, 특정 상황 하에서의 자본출자의무의 면제 등)을 대체 또는 보충함.Side Letter에 따라 특정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병행투자기구의 투자자는 다른 유한책임조합원은 얻을 수 없는 추가적인 이익(특정 투자에 관한 우선적인 경제적 조건, 우선적 공동투자권리, 특정 상황 하에서의 자본출자의무의 면제 등)을 얻을 수 있음. 적용 법령 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Brookfield 관리자는 모든 유한책임조합원에게 Side Letters 또는 Side Letters에 따른 권리 또는 조건에 관하여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추가적이거나 다른 권리 또는 조건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LPA 14.2  LPA 14.3  LPA 14.7  LPA 14.11  LPA 14.12 |

끝.

1.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위와 같이 전문투자형(일반) 펀드의 자산운용제한 자체가 완화된 점과 별개로, 외국펀드가 해당 펀드에 100%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 재간접펀드를 상대로 판매하는 경우, 등록된 외국펀드에 한하여(시행령 제7조 제4항 제6호의2 나목) 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행령 제301조 제4항). [↑](#footnote-ref-1)
2. 본건 역외펀드의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른 펀드 등록은 역외 자산운용사(본 사안의 경우 Brookfield)가 준수 및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ootnote-ref-2)
3. 이러한 대안적 투자 구조에서 Note Issuer 자체를 등록할 것인지, 아니면 Note Issuer의 투자대상인 본건 역외펀드(BID III-B)를 등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감독관청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footnote-ref-3)
4. 투자신탁(계약형 펀드)의 해외 투자 시, 종래 금융감독원 입장은 투자신탁은 법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해외 투자에 대한 신고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수탁회사) 양 측 모두 가능하며, 투자신탁의 실제 운용을 담당하여 투자신탁의 세부내용에 대해 보다 잘 알고 있는 집합투자업자가 주로 신고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안내서(2009. 9), 5면). 이후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 관계에 있어 「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집합투자업자라는 유권해석을 하였고(글로벌금융과-362, '15.3.20.), 2015. 6. 2.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footnote-ref-4)
5. 제7조(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② 금융회사등(공동으로 동일한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투자신고(수리)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

   1. 영 제8조제1항에 준하는 투자의 경우

   2. 지분투자금액을 포함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부채성증권 매입,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출ㆍ보증 및 담보제공을 말한다)한 총투자금액이 당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투자목적이 아닌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외국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4. 역외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소속된 자금운용단위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인 경우 [↑](#footnote-ref-5)
6. **제1-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기관투자가”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금융기관(제18호의 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집합투자기구, 제10조제3항제3호·제12호·제13호의 자 및 영 제7조제4호에 따른 체신관서를 말한다.  [↑](#footnote-ref-6)
7. 향후 본건 역외펀드의 출자약정액(병행펀드 제외) 대비 국내펀드의 출자약정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footnote-ref-7)
8. Note Issuer의 GP 또는 Brookfield와 체결하는 Side Letter에 이러한 통지의무를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footnote-ref-8)
9. Brookfield Infrastructure US Holdings LLC [↑](#footnote-ref-9)
10. Brookfield Asset Management Inc. 및 그 계열회사를 말함. [↑](#footnote-ref-10)
11. 델라웨어 유한책임회사인 BID Administrator LLC를 의미함. [↑](#footnote-ref-11)
12. Province of Manitoba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조합인 Brookfield Asset Management Private Institutional Capital Adviser (Canada) L.P.를 의미함. [↑](#footnote-ref-12)
13. 최소수익(Minimum Return)은, 이전 종결에 참여한 각 유한책임조합원에 관하여, 투자자본을 구성하는 각 유한책임조합원의 자본출자금에 대한 연 5%의 수익률로, 후속모집에서 추가유한책임조합원이 가입함에 따라 감소하게 되며,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 배당(배당 간주)되는 누적 금액으로 계산됨. [↑](#footnote-ref-13)
14. (a) 총 출자약정금의 최소 75%가 (i) 투자대상(Investment)에 투자된 날, (ii) 기본관리수수료를 포함하는 비용등(Expenses)의 지급 등을 위하여 사용 또는 유보된 날, (iii) 미래의 투자를 위하여 출자 또는 유보된 날, (iv) 허용된 차입금을 지급하는데 사용 또는 유보된 날, (b) 약정기간(Commitment Period)의 만료일, (c) 본건 운용사가 더 이상 본건 펀드의 운용사가 아니게 된 날, (d) 본건 펀드의 청산 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함. [↑](#footnote-ref-14)
15. 해당 투자를 보유하거나 처분함으로써, ‘미국 내 영업 또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는 투자. [↑](#footnote-ref-15)
16. “Person”은 어느 개인 또는 법인, 문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인 대표자, 지분승계인을 의미함(Sec 1.156). [↑](#footnote-ref-16)
17. 조합원계좌부에 대한 손실 잔액에 관하여 미국 세법을 적용하여 조정한 금액. [↑](#footnote-ref-17)